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단5209852 판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A

변론 종결2016. 3. 16.

판결 선고2016.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01,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7.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304,721,785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서울중앙 2009가합24366)을 갖고 있다.

나. 피고와 B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1동 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2 지분의 공유자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등기원인 2005. 11. 28.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B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 신청(서울중앙 D)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B 지분은 매각되었고 제일은행은 2015. 4. 7. 그 배당절차에서 154,901,191원을 배당받았다.

라. B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고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의 각 기재,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 경매됨에 따라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제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응하는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154,901,19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가 면제된 2015.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7.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B이고, B의 지분도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다툼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지 여부가 첫 쟁점이고 명의신탁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피고 주장에 유리한 정황

을 각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래 동서인 E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을 운영하였고 피고의 처제인 G도 소외 회사 감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날 그 대부분이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피고 계좌에서 2005. 11. 23.경 1억 7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는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하지만, B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피고 지분에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점, 피고 명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외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 계좌로 이자를 입금한 점, E가 피고 계좌로 8천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돈의 입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그 입금 경위를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의 지급시기와 피고가 상속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B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강제경매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피고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에게 그 1/2지분을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의신탁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B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나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선일